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도기육 의원 외 16명)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기육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
----------	-----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도기육, 박영서, 남진복,
김희수, 박용선, 나기보,
박권현, 방유봉, 박태춘,
김하수, 김득환, 박영환,
윤승오, 박현국, 이종열,
이철구, 황병직 의원(17명)

찬 성 자 : -명

1. 개정이유

- 2018년 12월 말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2020년 말까지 취득세 면제(안 제4조)
- 나.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가 신도시 내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2019년말까지 취득세 감면(안 제1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요인없음
- 해당부서 검토의견 : 첨부
-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7. 참고사항

-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19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p>하는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해당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p>	<p>----- ----- ----- ----- ----- ----- ----- ----- ----- ----- 2019년 12월 31일-----.</p>

관 련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 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 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
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② 사업주체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2.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3.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공익단체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frac{\text{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text{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	---------------------	---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김 덕 환
입안주무부서	정책기획관	통 보 (조 치) 일	2018. 10. 24.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X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X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X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X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개성	X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감면조항의 감면기간 연장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안 제4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감면기간 연장에 따른 감면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예상
- 감면추계액 : 13,583천원
※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자부담 사업비 485.1백만원의 2.8%

(안 제14조)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감면

- 감면기간 연장에 따른 감면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예상
- 감면소요량 : 33명
※ 세정담당관-9421(2018.8.10.)호에 의한 소요량 조사결과
- 취득감면액 : 2,387천원('19.2월 분양예정 전용 84㎡ 공동주택 기준층 분양가 238,700천원의 1%)
- 감면추계액 : 78,771천원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박대성(054-880-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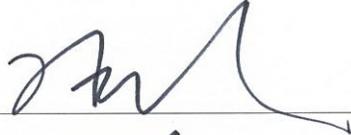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노기욱	노기욱	
박영서	박영서	
김진규	김진규	
김희석	김희석	
박영서	박영서	
나기보	나기보	
박진현	박진현	
박우봉	박우봉	
박승현	박승현	
김하우	김하우	
김응환	김응환	
박영환	박영환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윤승민		
박현우		
이종연		
이철우		
황병직	